##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인요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19 발의연월일: 2024. 9. 13.

발 의 자:인요한・성일종・구자근

장동혁 • 권영세 • 조승환

조정훈・최수진・우재준

김도읍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사기죄의 법정형은 1953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음. 형법 제정 당시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이었으나 2010년 형법 개정을 통해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으로 연장되었는바, 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대응하여 강화하고자 함(안 제347조제1항, 제347조의2 및 제348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47조제1항 중 "2千萬원"을 "4천만원"으로 한다. 제347조의2 중 "2천만원"을 "4천만원"으로 한다. 제348조제1항 중 "2천만원"을 "4천만원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347條(詐欺) ① 사람을 欺罔하	第347條(詐欺) ①
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	
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10年	
以下의 懲役 또는 <u>2千萬원</u> 以	<u>4천만원</u>
下의 罰金에 處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47조의2(컴퓨터등 사용사기)	제347조의2(컴퓨터등 사용사기)
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	
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	
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	
입력 •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	
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	
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	
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	
징역 또는 <u>2천만원</u> 이하의 벌	<u>4천만원</u>
금에 처한다.	,
제348조(준사기) ① 미성년자의	제348조(준사기) ①
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	
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	
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	
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	
또는 <u>2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	<u>4천만원</u>
처한다.	<b>.</b>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